|  |  |  |
| --- | --- | --- |
| **해관총서 일부 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  해관총서 령 [2014] 218호  <해관총서 일부 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은 2014년 2월 13일 해관총서서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발표하고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서 장  2014년3월13일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 직능을 빠르게 변화하여 행정심사비준 제도개혁의 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등 7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주석 령 제8호) 및 <국무원 부분 행정법규 수정에 관한 결정>(국무원 령 제645호), <국무원 일괄 행정심사비준 프로젝트 취소와 이양에 관한 결정>(국발 [2013] 44호)에 근거하여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료가공 보세그룹에 관한 관리방법> 등 15부 규정에 대해 수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료가공 보세그룹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41호 발표>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8조의 “보세그룹이 수출제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수입원료, 건전(件前)을 위해 유력기업은 경무주관부문이 반포한 <진료가공비준서>와 계약 부본 또는 주문카드를 가지고 해관에 계약등기 비안수속을 처리한다. 해관이 심사비준을 거쳐 착오가 없으면 <진료가공비준서>(이하'등기수책')를 발행하고 우측상단에 '보세그룹화물' 도장을 찍는다.”를 “보세그룹은 수출제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수입원료, 건전(件前)을 위해 유력기업은 경무주관부문이 반포한 <진료가공비준서>와 계약 부본 또는 주문카드로 해관에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하고 해관은 <진료가공등기수책>(이하'등기수책')을 발행하며 우측상단에 '보세그룹화물' 도장을 찍는다.”로 수정한다.  (2) 제10조의 “해관은 보세그룹이 수입한 료, 건에 대해 전액 보세하고 그룹의 유력기업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 감독관리 수속비를 납부한다. 수입한 료, 건을 지정한 보세창고에 저장하고, 료, 건을 출고가공할 때 해관은 보세창고 및 저장한 화물에 대해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세수입 료, 건은 가공단계에 들어갈 때 해관은 보세공장에 대해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가공한 완제품 수출은 수출관세를 면제하며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한다면 해관에 수출화물허가증을 넘겨주어 검증을 받는다.”를 “해관은 보세집단이 수입한 료, 건에 대해 전액보세하고 그룹의 유력기업은 규정에 따라 해관에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한 료, 건을 지정한 보세창고에 저장하고 료, 건을 출고가공할 때, 해관은 보세창고 및 저장한 화물에 대해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보세수입 료, 건은 가공절차에 들어갈 때 해관은 보세공장에 대해 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가공한 완제품 수출은 수출관세를 면제하며 수출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한다면 해관에 수출화물허가증을 넘겨주어 검증을 받는다.”로 수정한다.  (3) 제14조의 “보세수입한 료, 건은 수입한 날로부터 1년 내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역수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세집단의 유력기업은 해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연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가공 완제품을 재수출 또는 수입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해관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보세수입한 료, 건은 수입한 날로부터 1년 내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역수출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세집단의 유력기업은 해관에 연기변경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단, 연기는 최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가공 완제품 재수출 또는 수입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유관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74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5조의 “경영단위가 타지역 가공무역을 전개할 때 그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심사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과 가공기업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신청표>(양식은 첨부1을 참고, 이하<신청표>)를 기입하고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에 타지역 가공신청을 제출한다.”를 “경영단위가 타지역 가공무역을 전개할 때 그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심사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과 가공기업 소재지 외경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신청표>(양식은 첨부1을 참고, 이하<신청표>)를 기입하고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에 타지역 가공수속을 진행한다.”로 수정한다.  (2) 제6조의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이 타지역 가공신청을 심사비준할 때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했던 경영단위에 대해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이 피드백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 영수증>(양식은 첨부 2를 참조, 이하 <영수증>)을 열람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쳐 계약 집행상황이 정상적인 경우 <신청표>(일식 이연)내 평어와 주해에 서명날인하고 <가공무역업무비준증>,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과 같이 밀봉하여 경영단위에 제출하여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에 계약등기 비안을 진행한다.”를 “경영단위를 주관하는 해관이 타지역 가공수속을 진행할 때 타지역 가공무역 업무를 진행했던 경영단위에 대해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이 피드백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격지 가공무역 영수증>(양식은 첨부 2를 참조, 이하 <영수증>)을 열람해야 한다. 사실 확인을 거쳐 계약집행 상황이 정상적인 경우 <신청표>(일식 이연)내 평어와 주해에 서명날인하고 <가공무역업무비준증>,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과 같이 밀봉하여 경영단위에 제출하여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에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다.”로 수정한다.  (3) 제7조의 “가공기업을 주관하는 해관은 경영단위가 제공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 “위탁가공계약”,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 <신청표> 및 기타 유관서류로 계약등기 비안을 진행한다. 가공기업이 해관에 계약 비안수속을 진행한 경우, 경영단위가 발행한 위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를 “가공기업 주관해관은 경영단위가 제공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 위탁가공계약,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 증명>, <신고표> 및 기타 유관서류로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다. 가공기업이 해관에 수책설립 수속을 진행한 경우, 경영단위가 발행한 위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4) 첨부한 ‘신청표’를 ‘신고표’로 수정하고 ‘계약등기비안 진행’을 ‘수책설립’으로 수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이전 화물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해관총서 령 제89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1항의 “이전 화물신고의 전자데이터와 서면서류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기입보고 또는 전송 착오가 원인인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관의 동의를 거치면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이전 화물에 대해 신고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를 “이전 화물신고의 전자데이터와 서면서류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지고 있다. 명확한 기입보고 또는 전송 착오가 원인인 데이터에 대해 수출입화물 신고서 수정 또는 취소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한 경우 수정 또는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이전 화물에 대해 신고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한 초과 미통관 수입화물,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의　입경화물과　폐기수입화물에 대한 처리방법＞(해관총서 령 제91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1항의 “입경 운수공구가 해관 감독관리구 또는 기타 해관 비준의 장소에 입경하여 하역하는 중 문제로 수입화물 적재리스트, 운송장에 열거하지 않고 해관에 입경한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한 입경화물을 신고한다면 해관의 심사결정을 거쳐 확실한 경우 해당 화물을 운반한 원래 운수공구 담당자가 해당 운수공구가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관에 반송 출국수속 처리를 신청한다. 해당 화물의 송수하인이 해당 운수공구가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관에 반송 또는 수입신고 수속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를 “입경 운수공구가 해관 감독관리구 또는 기타 해관 비준의장소에 입경하여 하역하는 중 문제로 수입화물 적재리스트, 운송장에 열거하지 않고 해관에 입경한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한 입경화물을 신고한다면 해관의 심사결정을 거쳐 확실한 경우 해당 화물을 운반한 원래 운수공구 담당자가 해당 운수공구가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관에 직접 반송 출국수속 처리를 신청한다. 해당 화물의 송수하인이 해당 운수공구가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해관에 반송 또는 수입신고 수속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규정>(해관총서 령 제103호 공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조의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의 신고수속을 진행하는 인력은 통관원 자격을 취득하고 해관에 등록된 통관원이여야 한다. 통관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해관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수출입화물 신고수속을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통관원은 국가와 해관의 법률∙법규 규정과 요구에 따라 통관활동을 전개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통관원 및 그 소속 기업은 통관원의 신고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한다.”를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의 신고수속을 진행하는 인력은 해관에서 비안된 통관인력이여야 한다.  (2) 제10조 제2항의 “해관은 이미 신고하여 접수한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수공감사를 거친 후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은 해관규정에 따라 수정을 진행하여 다시 발송한다. 신고한 날짜는 여전히 해관이 원래 신고를 접수한 날짜이다.”를 “해관은 이미 신고하여 접수한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수공감사로 반송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은 10일 내 수정을 완료하여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다시 발송하며 신고날짜는 여전히 해관이 원래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접수한 날짜이다. 10일을 초과한 경우 원래 통관서는 무효이고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은 별도로 해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날짜는 해관이 재차 신고를 접수한 날짜이다.”로 수정한다.  (3) 제14조의 “해관은 수출입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내용에 대해 수정하지 못하고 통관서는 취소하지 못하며;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때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이 해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해관의 감사비준을 거친 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산기, 인터넷 시스템 등 원인으로 전자데이터를 잘못 신고한 경우  ② 해관이 수출입화물 출항수속을 처리한 후 선적, 적재 등 원인으로 원래 신고화물의 부분 또는 전부를 퇴관이 통관서 및 그 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통관인력이 조작 또는 오타의 실수로 신고에 착오를 일으켰지만, 국가무역관리제도정책의 실시, 세금징수 및 해관통계지표 등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④ 해관감정가격, 종류별 감사 또는 전문적인 인정을 거친 후 원래 신고데이터에 대해 수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무역관습에 근거하여 우선 임시가격으로 매매를 성립, 실제 정산할 때 상품검사를 통한 품질인정에 따르거나 국제시장 실제가격으로 지불하는 방식에 따라 기 신고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관은 이미 수출입화물에 대해 감시, 규제, 감사 결정을 내린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 받은 통관기업은 통관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통관서를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를 “해관은 수출입화물 신고를 접수한 후 통관서 및 그 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통과서 수정과 취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부자재，잔여자재，불량품, 부산물, 재해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11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5조의 “가공무역기업이 잔여자재를 다른 가공무역계약에 이월하여 사용한 것을 신고한 경우 동일한 경영기업, 동일한 가공기업, 같은 수입자재와 동일한 가공무역방식이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해관은 규정에 따라 단위 제품 소모량을 확정한 후 기업은 해당계약 삭제 및 잔여자재 이월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잔여자재 전입계약이 상무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 경우 원래 심사비준 부문이 변경방식에 따라 관련수속을 처리하고 잔여자재의 전입량이 이미 비준한 계약수입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변경수속을 면할 수 있다. 전입계약이 신설계약인 경우 상무주관부문이 현행 가공무역 심사비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공무역기업 잔여자재 이월신고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업은 이월보세자재가 미지급세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리스크담보금을 납부한 후 해관이 처리한다.  (1) 동일한 경영기업이 잔여자재를 다른 가공기업에 이월한 것을 신고한 경우  (2) 잔여자재의 전출금액이 해당 가공무역계약 항에서 실제 수입자재 총액의 50% 그 이상에 달하는 경우  (3) 잔여자재를 포함한 가공무역계약이 2회 및 2회 이상 연기수속으로 처리된 경우  잔여자재의 이월수속이 다른 주관해관과 관련된 경우, 쌍방 해관이 관련된 수속을 처리하고 전입지 해관이 리스크담보금을 수취한다.  전항이 열거한 리스크담보금을 납부해야 할 가공무역기업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리스크담보금의 납부를 면할 수 있다.  (1) 가공무역 A류 관리를 적용한 경우  (2) 대장납부를 실행한 계약, 대장납부금액이 이월보세료건 미지급세금금액 이하인 경우  (3) 원래 기업의 이전, 합병, 분리, 구조조정, 제도개혁, 지분변경 등 법률규정 상황이 발생하고 현재 기업이 원래 기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 또는 채권채무관계를 승계한 경우 잔여자재의 이월은 동일한 경영기업, 동일한 가공기업, 동일한 무역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8조 제1항의 “가공무역기업이 가공생산과정에서 생산 또는 회수를 거쳐 추출 가능한 부산물을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해관에 비안 또는 핵소 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를 “가공무역기업이 가공생산과정에서 생산 또는 회수를 거쳐 추출 가능한 부산물을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해관에 수책설립 또는 심사삭제 수속을 진행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3) 제9조 제(1)항에서 “심사삭제신청”을 “심사종결신청”으로 수정하여 보고한다.  (4) 제11조를 “가공무역기업의 문제로 내수판매를 할 수 없거나 반송된 부자재, 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또는 재해보세화물에 대해 가공무역기업이 법적 자격이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소각처리를 하고 해관은 관련 서류, 처리단위가 발행한 접수영수증과 처리증명 등 자료로 심사삭제 수속을 처리한다.  해관은 인력을 파견하여 감독 처리할 수 있고 가공무역기업 및 유관 처분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가공무역기업은 처리로 인해 취득한 수입을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해관은 부산물 내수판매 과세 관리규정과 비교/대조하여 과세수속을 처리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해관총서 령 제117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48조 제(1)항, 제49조를 삭제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24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의 조정으로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 수출입 납세신고수속을 처리한 해관이 소재하고 있는 직속해관에 지연납부세금의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납세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를 “납세의무자는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 조정으로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 신고장소의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에 지연납부세금의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납세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2) 제25조 제1항의 “직속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지연납부세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상황의 사실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상황이 사실인 경우 즉시 유관 신청자료를 해관총서에 송부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신청자료를 받은 후 20일 내 지연납부세금 동의여부 및 지연납부세금의 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자료를 보낸 직속해관에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20일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를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지연납부세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상황의 사실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지연납부세금 동의여부 및 지연납부세금의 기한을 결정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30일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3) 제26조 제1항의 “해관총서 감사를 거쳐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납세의무자에 통지해야 하고 세금납부서를 발급한다.”를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은 감사를 거쳐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납세의무자에 통지해야 하고 세금납부서를 발급한다.”로 수정한다.  9.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지연금 징수방법>(해관총서 령 제128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조 “수입화물 수하인은 해관에 통관서 전자데이터 신고를 발송한 후 규정기한 또는 심사비준 기한 내 서면 통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전자데이터 통관서를 취소 처리하며 수입화물 수하인이 해관에 다시 신고하여 지연신고가 발생한 경우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신고지연금 징수 시작일을 계산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이 신고하여 해관의 법에 의거한 심사비준을 거쳐 반드시 원래 전자데이터 통관서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할 경우 수입화물 수하인은 신청을 거쳐 해관의 심사비준 동의를 거치면 원래 통관서를 취소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징수 시작일로 한다.”를 “수입화물 수하인은 해관에 통관서 전자데이터 신고를 발송한 후 규정기한 또는 심사비준기한 내 서면 통관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취소 처리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은 다시 해관에 신고하여 지연신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신고지연금 징수 시작일을 계산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이 신고한 후 원래 통관서 전자데이터가 법에 의거하여 취소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원래 통관서를 취소된 날로부터 15일에 징수한다.”  (2) 제12조의 “수입화물 수하인은 해관에 신고지연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를 “수입화물 수하인은 신고장소 해관에 신고지연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12조 제(4)항의 “해관 및 관련 법률집행부문의 업무원인으로 수하인은 규정기한 내 신고할 수 없어 지연신고를 하게 된 경우”를 “해관 및 관련 사법, 행정법률집행부문의 업무원인으로 수하인은 규정기한 내 신고할 수 없어 지연신고를 하게 된 경우”로 수정한다.  (3) 제14조를 삭제하고, 기타 조항의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  (4) 제15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15조 제(3)항의 “수입화물 수하인이 해관에 신고하여 법에 의거한 심사비준을 거쳐 반드시 원래 전자데이터 통관서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 삭제하고 다시 신고한 원인으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를 “수입화물 수하인이 신고 후 법에 의거하여 원래 통관서 전자데이터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신고한 원인으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로 수정한다.  2. 제15조 제(4)항의 “수입화물이 해관의 비준을 거쳐 직접 반송된 경우”를 “수입화물을 직접 반송처리 한 경우”로 수정한다.  상응하게 본 조의 조항순서를 제14조로 조정한다.  (5) 제17조의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지연금 징수 시작일이 법정 휴가일이라면 그 후부터 1 영업일 후로 순연한다.”를 “본 방법에서 규정한 신고지연금 징수 시작일이 휴무일 또는 법정휴가일 인 경우 휴무일 또는 법정휴가일 후부터 1 영업일 후로 순연한다. 국무원이 휴무일 또는 법정휴가일을 임시로 조정할 경우 해관은 조정후의 상황에 따라 신고지연금의 징수 시작일을 확정한다.”로 수정한다.  본 조의 조항순서를 상응하게 제16조로 조정한다.  10.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증언 청취방법>(해관총서 령 제145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 “통관 직업종사의 임시 정지”를 삭제하고, “통관 종업자격을 취소”로 서술한다.  1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가공무역 단위 소모량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55호 공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비안 단계의 해관에 단위 소모량을 비안해야 한다.”를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 수책설립 단계에 해관의 단위 소모량을 비안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해관청서 령 제158조 공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상품번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 등 규정에 따라 해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한 상품번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정과 취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1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해관총서 령 제159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0조 제2항의 “통관 직업종사의 임시 정지”와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2) 제75조 제2항의 “또는 직업종사”와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1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의 방법>(해관총서 령 제166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제(1)항의 “또는 종사직업”과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1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69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를 신고한 후 <집중신고리스트>의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송수하인이 리스트신고 후 집중신고리스트를 수정 또는 취소한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정과 취소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본 결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료가공 보세그룹에 관한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에 관한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이전 화물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한 초과 미통관 수입화물,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의 입경화물과 폐기수입화물에 대한 처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부산물，잔여자재，불량품, 부산물, 재해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지연금 징수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증언 청취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가공무역 단위 소모량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의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은 본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한 수정을 함으로 다시 발표한다.  첨부 :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진료가공 보세그룹에 관한 관리방법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타지역 가공무역에 관한 관리방법  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이전화물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  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한 초과 미통관 수입화물, 착오하역 또는 과다하역의 입경화물과 폐기수입화물에 대한 처리방법  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규정  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부산물，잔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재해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  7.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  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방법  9.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지연금 징수방법  10.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증언 청취방법  1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  1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13.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  1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재의 방법  15.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 |  | **海关总署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  海关总署令﹝2014﹞218号  《海关总署关于修改部分规章的决定》已于2014年2月13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署 长  2014年3月13日    为了有效推动简政放权、转变职能，深化行政审批制度改革，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等七部法律的决定》（主席令第8号）以及《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国务院令第645号）、《国务院关于取消和下放一批行政审批项目的决定》（国发〔2013〕44号），海关总署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料加工保税集团管理办法》等15部规章进行修改，具体内容如下：  　　 一、《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料加工保税集团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41号公布）作如下修改：  　　（一）将第八条“保税集团在为加工出口产品所需进口料、件前，其牵头企业应持凭经贸主管部门颁发的《进料加工批准书》连同合同副本或订货卡片向海关办理合同登记备案手续。海关审核无误后，向其签发《进料加工登记手册》（以下简称《登记手册》），并在右上角加盖‘保税集团货物’戳记。”修改为“保税集团在为加工出口产品所需进口料、件前，其牵头企业应当凭经贸主管部门颁发的《进料加工批准书》连同合同副本或者订货卡片向海关办理手册设立手续，海关发放《进料加工登记手册》（以下简称《登记手册》），并在右上角加盖‘保税集团货物’戳记。”  　　（二）将第十条“海关对保税集团进口的料、件予以全额保税，集团的牵头企业应按规定向海关交纳监管手续费。进口的料、件应存入指定的保税仓库，料、件出库加工时，海关按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办法进行监管。保税进口料、件进入加工环节时，海关按对保税工厂的管理办法进行监管。加工的成品出口，免征出口关税，如属出口许可证管理商品，还应向海关交验出口货物许可证。”修改为“海关对保税集团进口的料、件予以全额保税，集团的牵头企业应当按照规定向海关办理手续。进口的料、件应存入指定的保税仓库，料、件出库加工时，海关按照对保税仓库及所存货物的管理办法进行监管。保税进口料、件进入加工环节时，海关按照对保税工厂的管理办法进行监管。加工的成品出口，免征出口关税，如果属于出口许可证管理商品，还应当向海关交验出口货物许可证。”  　　（三）将第十四条“保税进口的料、件，应自进口之日起一年内加工成品返销出口。如有特殊情况需要延长期限的，保税集团的牵头企业应向海关提出书面申请，但延期最长不得超过一年。如期满仍未加工成品复出口或转为进口的，由海关按《海关法》有关规定处理。”修改为“保税进口的料、件，应当自进口之日起一年内加工成品返销出口。如果有特殊情况需要延长期限的，保税集团的牵头企业应当向海关办理延期变更手续，但是延期最长不得超过一年。如果期满仍未加工成品复出口或者转为进口的，由海关按照有关规定依法处理。”  　　二、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异地加工贸易的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74号发布）作如下修改：  　　（一）将第五条“经营单位开展异地加工贸易，须凭其所在地外经贸主管部门核发的《加工贸易业务批准证》和加工企业所在地外经贸主管部门出具的《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异地加工贸易申请表》（格式见附件1，以下简称《申请表》），向经营单位主管海关提出异地加工申请。”修改为“经营单位开展异地加工贸易，应当凭其所在地外经贸主管部门核发的《加工贸易业务批准证》和加工企业所在地外经贸主管部门出具的《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异地加工贸易申报表》（格式见附件1，以下简称《申报表》），向经营单位主管海关办理异地加工手续。”  　　（二）将第六条“经营单位主管海关在核准其异地加工申请时，对于办理过异地加工贸易业务的经营单位，须查阅由加工企业主管海关反馈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异地加工贸易回执》（格式见附件2，以下简称《回执》）。经核实合同执行情况正常的，在《申请表》（一式二联）内批注签章，与《加工贸易业务批准证》、《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一并制作关封，交经营单位凭以向加工企业主管海关办理合同登记备案。”修改为“经营单位主管海关在办理异地加工手续时，对于办理过异地加工贸易业务的经营单位，应当查阅由加工企业主管海关反馈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异地加工贸易回执》（格式见附件2，以下简称《回执》）。经核实合同执行情况正常的，在《申报表》（一式二联）内批注签章，与《加工贸易业务批准证》、《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一并制作关封，交经营单位凭以向加工企业主管海关办理手册设立手续。”  　　（三）将第七条“加工企业主管海关凭经营单位提供的《加工贸易业务批准证》、“委托加工合同”、《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申请表》及其他有关单证办理合同登记备案。如由加工企业向海关办理合同备案手续的，必须持有经营单位出具的委托书。”修改为“加工企业主管海关凭经营单位提供的《加工贸易业务批准证》、委托加工合同、《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申报表》及其他有关单证办理手册设立手续。如果由加工企业向海关办理手册设立手续的，应当持有经营单位出具的委托书。”  （四）将附件中“申请表”修改为“申报表”，“办理了合同登记备案”修改为“设立手册”。  　　三、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转关货物监管办法》（海关总署令第89号公布）作如下修改：  将第八条第一款的“转关货物申报的电子数据与书面单证具有同等的法律效力。对确因填报或传输错误的数据，有正当理由并经海关同意，可作修改或者撤销。对海关已决定查验的转关货物，不再允许修改或撤销申报内容。”修改为“转关货物申报的电子数据与书面单证具有同等的法律效力。对确因填报或者传输错误的数据，符合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相关规定的，可以进行修改或者撤销。对海关已经决定查验的转关货物，不再允许修改或者撤销申报内容。”  　　四、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超期未报关进口货物、误卸或者溢卸的进境货物和放弃进口货物的处理办法》（海关总署令第91号发布）作如下修改：  将第三条第一款的“由进境运输工具载运进境并因故卸至海关监管区或者其他经海关批准的场所，未列入进口载货清单、运单向海关申报进境的误卸或者溢卸的进境货物，经海关审定确实的，由载运该货物的原运输工具负责人，自该运输工具卸货之日起三个月内，向海关申请办理退运出境手续；或者由该货物的收发货人，自该运输工具卸货之日起三个月内，向海关申请办理退运或者申报进口手续。”修改为“由进境运输工具载运进境并因故卸至海关监管区或者其他经海关批准的场所，未列入进口载货清单、运单向海关申报进境的误卸或者溢卸的进境货物，经海关审定确实的，由载运该货物的原运输工具负责人，自该运输工具卸货之日起三个月内，向海关办理直接退运出境手续；或者由该货物的收发货人，自该运输工具卸货之日起三个月内，向海关办理退运或者申报进口手续。”  　　五、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103号公布）作如下修改：  　　（一）将第六条“为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办理申报手续的人员，应当是取得报关员资格并在海关注册的报关员。未取得报关员资格且未在海关注册的人员不得办理进出口货物申报手续。报关员应当按照国家和海关的法律法规规定和要求开展报关活动。除法律、行政法规和规章另有规定外，报关员及其所属企业应对报关员的申报行为承担相应的法律责任。”修改为“为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办理申报手续的人员，应当是在海关备案的报关人员。”  　　（二）将第十条第二款的“海关已接受申报的报关单电子数据，经人工审核后，需要对部分内容修改的，进出口货物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按照海关规定进行修改并重新发送，申报日期仍为海关原接受申报的日期。”修改为“海关已接受申报的报关单电子数据，人工审核确认需要退回修改的，进出口货物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在10日内完成修改并重新发送报关单电子数据，申报日期仍为海关接受原报关单电子数据的日期；超过10日的，原报关单无效，进出口货物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另行向海关申报，申报日期为海关再次接受申报的日期。”  　　（三）将第十四条“海关接受进出口货物的申报后，申报内容不得修改，报关单证不得撤销；确有如下正当理由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向海关递交书面申请，经海关审核批准后，可以进行修改或撤销：  　　1. 由于计算机、网络系统等方面的原因导致电子数据申报错误的；  　　2. 海关在办理出口货物的放行手续后，由于装运、配载等原因造成原申报货物部分或全部退关需要修改或撤销报关单证及其内容的；  　　3. 报关人员由于操作或书写失误造成申报差错，但未对国家贸易管制政策的实施、税费征收及海关统计指标等造成危害的；  　　4. 海关审价、归类审核或专业认定后需对原申报数据进行修改的；  5. 根据贸易惯例先行采用暂时价格成交、实际结算时按商检品质认定或国际市场实际价格付款方式需要修改原申报数据的；海关已经决定布控、查验进出口货物的，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不得修改报关单内容或撤销报关单证。”修改为“海关接受进出口货物的申报后，报关单证及其内容不得修改或者撤销；符合规定情形的，应当按照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的相关规定办理。”  　　六、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11号发布）作如下修改：  　　（一）将第五条修改为“加工贸易企业申报将剩余料件结转到另一个加工贸易合同使用，限同一经营企业、同一加工企业、同样进口料件和同一加工贸易方式。凡具备条件的，海关按规定核定单耗后，企业可以办理该合同核销及其剩余料件结转手续。剩余料件转入合同已经商务主管部门审批的，由原审批部门按变更方式办理相关手续，如剩余料件的转入量不增加已批合同的进口总量，则免于办理变更手续；转入合同为新建合同的，由商务主管部门按现行加工贸易审批管理规定办理。  　　加工贸易企业申报剩余料件结转有下列情形之一的，企业缴纳不超过结转保税料件应缴纳税款金额的风险担保金后，海关予以办理：  　　（一）同一经营企业申报将剩余料件结转到另一加工企业的；  　　（二）剩余料件转出金额达到该加工贸易合同项下实际进口料件总额50％及以上的；  　　（三）剩余料件所属加工贸易合同办理两次以及两次以上延期手续的；  　　剩余料件结转涉及不同主管海关的，在双方海关办理相关手续，并由转入地海关收取风险担保金。  　　前款所列须缴纳风险担保金的加工贸易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免于缴纳风险担保金：  　　（一）适用加工贸易Ａ类管理的；  　　（二）已实行台账实转的合同，台账实转金额不低于结转保税料件应缴税款金额的；  　　（三）原企业发生搬迁、合并、分立、重组、改制、股权变更等法律规定的情形，且现企业继承原企业主要权利义务或者债权债务关系的，剩余料件结转不受同一经营企业、同一加工企业、同一贸易方式限制。”  　　（二）将第八条第一款的“加工贸易企业在加工生产过程中产生或者经回收能够提取的副产品，未复出口的，加工贸易企业在向海关备案或者核销时应当如实申报。”修改为“加工贸易企业在加工生产过程中产生或者经回收能够提取的副产品，未复出口的，加工贸易企业在向海关办理手册设立或者核销手续时应当如实申报。”  　　（三）将第九条第（一）项中的“报请核销”修改报为“报核”。  　　（四）将第十一条修改为“加工贸易企业因故无法内销或者退运的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或者受灾保税货物，由加工贸易企业委托具有法定资质的单位进行销毁处置，海关凭相关单证、处置单位出具的接收单据和处置证明等资料办理核销手续。  海关可以派员监督处置，加工贸易企业以及有关处置单位应当给予配合。加工贸易企业因处置获得的收入，应当向海关如实申报，海关比照边角料内销征税的管理规定办理征税手续。”  　　七、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海关总署令第117号公布）作如下修改：  删去第四十八条第（一）项、第四十九条。  　　八、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24号公布）作如下修改：  　　（一）将第二十四条第一款的“纳税义务人因不可抗力或者国家税收政策调整不能按期缴纳税款的，应当在货物进出口前向办理进出口申报纳税手续的海关所在的直属海关提出延期缴纳税款的书面申请并随附相关材料，同时还应当提供缴税计划。”修改为“纳税义务人因不可抗力或者国家税收政策调整不能按期缴纳税款的，应当在货物进出口前向申报地的直属海关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提出延期缴纳税款的书面申请并随附相关材料，同时还应当提供缴税计划。”  　　（二）将第二十五条第一款的“直属海关应当自接到纳税义务人延期缴纳税款的申请之日起10日内审核情况是否属实，情况属实的，应当立即将有关申请材料报送海关总署。海关总署接到申请材料后，应当在20日内作出是否同意延期缴纳税款的决定以及延期缴纳税款的期限，并通知报送申请材料的直属海关。因特殊情况在20日内不能作出决定的，可以延长10日。”修改为“直属海关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应当自接到纳税义务人延期缴纳税款的申请之日起30日内审核情况是否属实，并作出是否同意延期缴纳税款的决定以及延期缴纳税款的期限。由于特殊情况在30日内不能作出决定的，可以延长10日。”  （三）将第二十六条第一款的“经海关总署审核未批准延期缴纳税款的，直属海关应当自接到海关总署未批准延期缴纳税款的决定之日起3个工作日内通知纳税义务人，并填发税款缴款书。”修改为“直属海关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经审核未批准延期缴纳税款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3个工作日内通知纳税义务人，并填发税款缴款书。”  　　九、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征收进口货物滞报金办法》（海关总署令第128号公布）作如下修改：  　　（一）将第六条“进口货物收货人在向海关传送报关单电子数据申报后，未在规定期限或核准的期限内递交纸质报关单，海关予以撤销电子数据报关单处理、进口货物收货人重新向海关申报，产生滞报的，按照本办法第四条规定计算滞报金起征日。进口货物收货人申报并经海关依法审核，必须撤销原电子数据报关单重新申报的，经进口货物收货人申请并经海关审核同意，以撤销原报关单之日起第十五日为起征日。”修改为“进口货物收货人向海关传送报关单电子数据申报后，未在规定期限或者核准的期限内递交纸质报关单以及随附单证，海关予以撤销报关单电子数据处理。进口货物收货人重新向海关申报，产生滞报的，按照本办法第四条规定计算滞报金起征日。  　　进口货物收货人申报后依法撤销原报关单电子数据重新申报的，以撤销原报关单之日起第十五日为起征日”。  　　（二）将第十二条中的“进口货物收货人可以向海关申请减免滞报金”修改为“进口货物收货人可以向申报地海关申请减免滞报金”。  　　第十二条第（四）项中的“因海关及相关执法部门工作原因致使收货人无法在规定期限内申报，从而产生滞报的”修改为“因海关及相关司法、行政执法部门工作原因致使收货人无法在规定期限内申报，从而产生滞报的”。  （三）删去第十四条，其他条款次序作相应调整。  　　（四）对第十五条作以下修改：  　　1. 将第十五条第（三）项的“进口货物收货人申报并经海关依法审核，必须撤销原电子数据报关单重新申报，因删单重报产生滞报的”修改为“进口货物收货人申报后依法撤销原报关单电子数据重新申报，因删单重报产生滞报的”。  　　2. 将第十五条第（四）项的“进口货物经海关批准直接退运的”修改为“进口货物办理直接退运的”。  相应将本条的条款顺序调整为第十四条。  　　（五）将第十七条“本办法规定的滞报金起征日如遇法定节假日，则顺延至其后第一个工作日。”修改为“本办法规定的滞报金起征日遇有休息日或者法定节假日的，顺延至休息日或者法定节假日之后的第一个工作日。国务院临时调整休息日与工作日的，海关应当按照调整后的情况确定滞报金的起征日。”  相应将本条的条款顺序调整为第十六条。  　　十、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听证办法》（海关总署令第145号公布）作如下修改：  删去第三条中“暂停报关执业”和“取消报关从业资格”的表述。  　　十一、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55号公布）作如下修改：  将第四条“加工贸易企业应当在加工贸易备案环节向海关进行单耗备案。”修改为“加工贸易企业应当在加工贸易手册设立环节向海关进行单耗备案。”  　　十二、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158号公布）作如下修改：  将第十三条“收发货人或者其代理人申报的商品编码需要修改的，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办法》等规定向海关提出申请。”修改为“收发货人或者其代理人申报的商品编码需要修改的，应当按照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的相关规定办理。”  　　十三、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程序规定》（海关总署令第159号公布）作如下修改：  　　（一）删去第六十条第二款中“暂停报关执业”和“取消报关从业资格”的表述。  （二）删去第七十五条第二款中“或者执业”和“取消报关从业资格”的表述。  　　十四、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复议办法》（海关总署令第166号公布）作如下修改：  删去第九条第（一）项中“或者执业”和“取消报关从业资格”的表述。  　　十五、对《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集中申报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169号公布）作如下修改：  将第十二条“收发货人在清单申报后申请修改或者撤销《集中申报清单》的，比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报关单修改和撤销管理办法》的相关规定办理。”修改为“收发货人在清单申报后修改或者撤销集中申报清单的，参照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的相关规定办理。”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料加工保税集团管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异地加工贸易的管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转关货物监管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超期未报关进口货物、误卸或者溢卸的进境货物和放弃进口货物的处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征收进口货物滞报金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听证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程序规定》、《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复议办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集中申报管理办法》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附件：  1.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料加工保税集团管理办法  2.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异地加工贸易的管理办法  3.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转关货物监管办法  4.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超期未报关进口货物、误卸或者溢卸的进境货物和放弃进口货物的处理办法  5.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6.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  　7.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8.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9. 中华人民共和国海关征收进口货物滞报金办法  10.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听证办法  　11.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单耗管理办法  　12.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商品归类管理规定  　13.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办理行政处罚案件程序规定  14. 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复议办法  15.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集中申报管理办法 |